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0. 9. 30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9월 6일

○ 회부일자 : 2000년 9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9. 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

가. 제안이유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21C 보건산업의 세계적인 생명공학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에 홍보하여 유치하는 것이 관건임.
- 이를 위해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보건산업 박람회를 개최기로 확정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단에 사무국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 재단은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부대사업의 시행,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재단의 재산은 충청북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비 및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0조)
-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

재단법인 국제 보건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국내외의 우량 기업과  
연구소의 유치·홍보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 보건산업 박람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행사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기획예산처의 행사성 신규사업 예산지원 억제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박람회 개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정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선행과제인 예산 확보대책 및 한시정원 승인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국제보건산업박람회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 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4.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비 및 국제보건산업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검사) ①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파견) ①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1조 (공공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에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그 시설을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參 考 資 料

- ① 關聯法規 (部分拔萃)
- ② 行事推進 體系 圖
- ③ 財團法人 設立推進  
日程

# 1. 關聯法規 (部分拔萃)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② ~ ③ (생략)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감독)

-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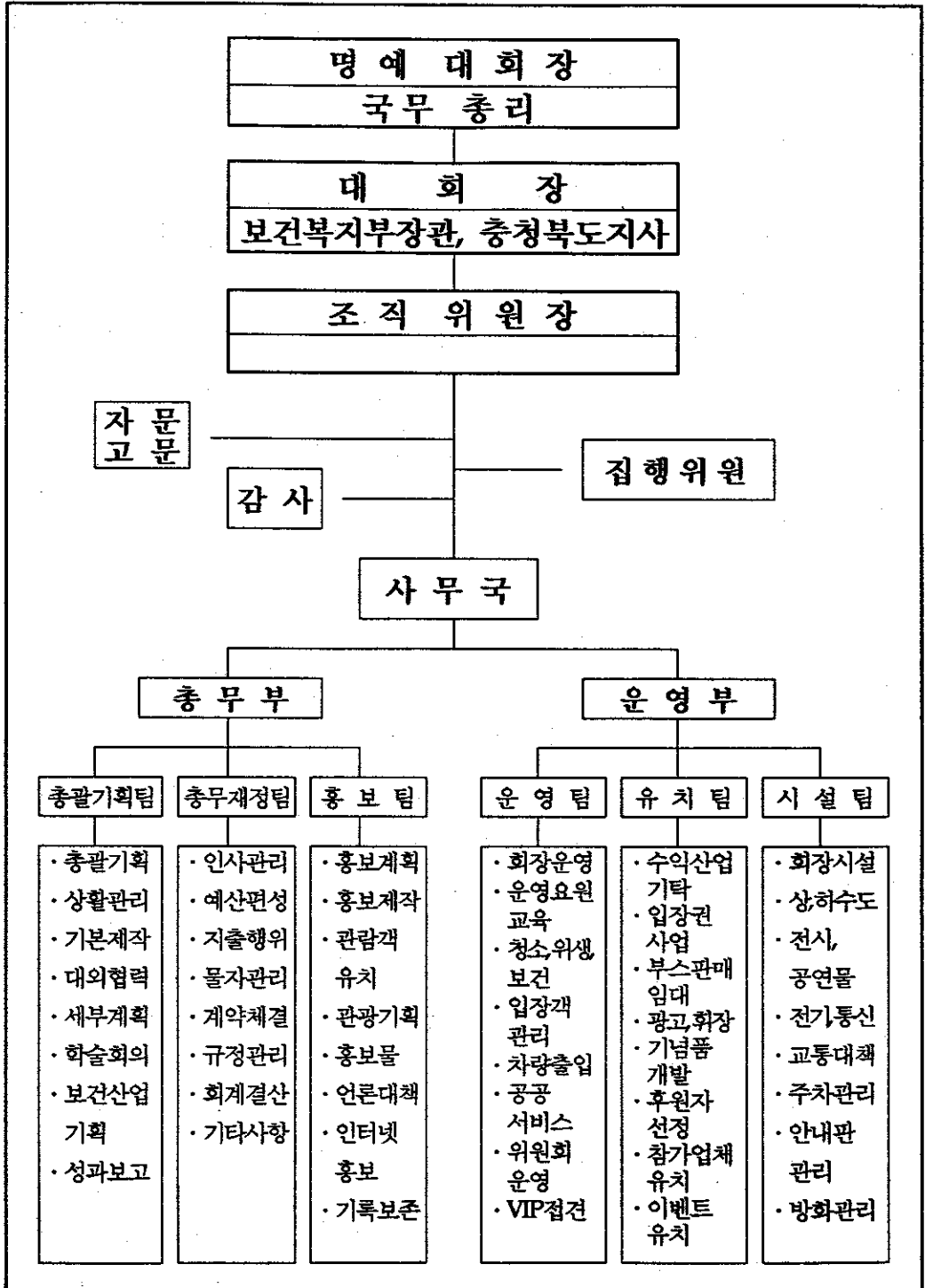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2. 行事 推進 體系圖



### 3. 財團法人 設立 推進日程

단계별	추진요목	추진내용
제1단계	○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윈설립및지원조례</li> <li>- 법인의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li> </ul>
	○ 법인설립 계획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추진일정</li> <li>법인설립 절차 등</li> </ul>
제2단계	○ 발기인 모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설립 발기인 선정</li> <li>법인설립 취지문 초안 작성</li> <li>법인정관 초안 작성</li> <li>이사장 등 임원진 모색</li> <li>기본재산 출연방안 모색</li> </ul>
	○ 발기인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설립 취지문, 정관 등 의결</li> <li>임원 선출 (이사장 등)</li> <li>기본재산 출연 확정</li> <li>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li> </ul>
	○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첨부)</li> <li>임원 이력서 (사진 첨부)</li> <li>재산목록 작성 (기본·보통재단)</li> <li>임원명부 작성</li> <li>허가신청 위임장(인감첨부)</li> <li>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li> </ul>
제3단계	○ 법인설립 허가 신청 및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기인 대표 → 보건복지부장관</li> </ul>
	○ 사업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세무서</li> </ul>
	○ 법인설립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지방법원</li> </ul>
	○ 설립등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 보건복지부장관</li> </ul>